

2025 수지초등학교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개정 2023.04.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단서 규정에 따라 수지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참관
2. 업체 선정 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현장 방문
3.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4.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 결정한 사항
5. 급식기구 구입시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급식기구 물품선정위원회를 겸한다.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한다(위원장 1명, 부위원장(교감) 1명, 학부모위원 2명, 교직원위원 2명, 간사(영양사) 1명).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하며,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소위원회 위원장이 호선되는 사유로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2. 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영양사로 한다.

제8조 【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이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